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7. 9.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: 2021년 7월 2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학교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(안 제3조)
-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지원 사업(안 제5조)
-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(안 제6조)
- 학교 먹는물 관리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의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,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‘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위생적인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노후 급수관, 직결급수와 같은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‘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’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,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청소 및 소독 등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,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시설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물의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